<bof>

1. [%1](#1 법인세 신고･납부)(#2 법인세 신고･납부)(#3 Corporate tax declaration and payment)[n]
   1. [%2](#1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2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3 Issuance of invoices and submission of invoice summaries)[n]
      1. [1](#1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2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3 Obligation to issue invoices and submit invoice summaries)[n]
         1. {1}(#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법법§121)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법령§164).)(#2 법인이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합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해아합니다.)(#3 In cases where a corporation supplies goods or services, it must issue an invoice to the recipient. Corporations must submit the invoice summary for sales and purchases separately, either issued or received during the business year, by February 10th of the following year.){r5<n>}
      2. [2](#1 세금계산서 교부 한 경우)(#2 세금계산서 교부 한 경우)(#3 When a tax invoice is issued)[n]
         1. {1}(#1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것으로 봄(법법§121⑥).)(#2 부가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경우 계산서 및 계산서합계표를 작성･발급,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3 When tax invoices and tax invoice summaries are prepared, issued, and submitted according to the Value Added Tax Act, it is considered that invoices and invoice summaries have been prepared, issued, and submitted.){r1<n>,r5<n>}
      3. [3](#1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경우)(#2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경우)(#3 Obligation to issue invoices to agents or representatives)[n]
         1. {1}(#1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2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가집니다.)(#3 In the case of consignment sales or sales by agents for agricultural, livestock, fishery products, or forest products, the consignee or agent is responsible for issuing invoices.){r1<n>,r5<n>}
      4. [4](#1 수입재화의 계산서 교부의무)(#2 수입재화의 계산서 교부의무)(#3 Obligation to issue invoices for imported goods)[n]
         1. {1}(#1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없음.))(#2 수입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해야합니다.)(#3 For imported goods, the tax authority must issue invoices.){r1<n>,r5<n>}
      5. [5](#1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법법§75의8))(#2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3 Penalty tax for insincere submission of invoices)[n]
         1. [5x1](#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등)(#3 Failure to submit tax invoice summaries by the supplier by purchase source, etc.)[n]
            1. {1}(#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 하거나,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공급가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 If a tax invoice summary is not submitted, or if the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or supply amount for each business entity is not provided in whole or in part, or if it is falsely stated, a penalty tax of 0.5% of the supply amount will be imposed as penalty tax.){r1<n>,r5x2<n>}
         2. [5x2](#1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2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3 Failure to provide required information on the invoice)[n]
            1. {1}(#1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2 발급한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 If all or part of the required information on an issued invoice is not provided, or if it is falsely stated, a penalty tax of 1.0% of the supply amount will be imposed as penalty tax.){ r1<n>, r5x1<n>}
         3. [5x3](#1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3 Failure to issue invoices on time)[n]
            1.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1.0%)에는 공급가액의 2.0%)(#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If the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does not issue invoices on time, a penalty tax of 2.0% will be imposed. However, if an electronic invoice must be issued and a non-electronic invoice is issued, or if an invoice is issued after the invoice issuance date, but before the 25th day of the following month in the business year-end in which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alls, a penalty tax of 1.0% will be imposed.) { r1<n>}
         4. [5x4](#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3 Issuing invoices without supplying goods or services)[n]
            1.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0%)(#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3 If goods or services are not supplied, but credit card sales slips, cash receipts, and invoices are issued, a penalty tax of 2.0% of the supply amount will be imposed.){ r1<n>, r5x5<n>}
         5. [5x5](#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3 If invoices or similar documents are issued without receiving goods or services)[n]
            1.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0%)(#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 If invoices or similar documents are issued without receiving goods or services, a penalty tax of 2.0% will be imposed on the taxable amount.){ r1<n>, r5x4<n>}
         6. [5x6](#1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2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3 If invoices or similar documents are issued under the name of another corporation.)[n]
            1.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0%)(#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 If invoices or similar documents are issued under the name of a corporation that is not the actual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a penalty tax of 2.0% will be imposed on the taxable amount.){ r1<n>, r5x7<n>}
         7. [5x7](#1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2 다른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3 If invoices or similar documents are issued under the name of another corporation.)[n]
            1. {1}(#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0%)(#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다른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 If invoices or similar documents are issued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who is not the actual supplier of goods or services, a penalty tax of 2.0% will be imposed on the taxable amount.){ r1<n>,r5x6<n>}
         8. [5x8](#1 전송기한이 지난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2 전송기한이 지난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3 If an issuance statement is sent after the deadline has passed.)[n]
            1. {1}(#1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에는 공급가액의 0.3%(’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1%))(#2 전송기한이 지난 후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합니다.)에는 공급가액의 0.3%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 If an electronic invoice issuance statement is sent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by the 25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alls, after the deadline has passed (excluding those subject to the penalty tax rate of 2.0% for insincere submission of invoices), a penalty tax of 0.3% will be imposed on the taxable amount.){ r1<n>, r5x9<n>}
         9. [5x9](#1 전송기한이 지난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2 전송기한이 지난 후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3 If an issuance statement is not sent after the deadline has passed.)[n]
            1. {1}(#1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에는 공급가액의 0.5%(’16.12.31. 이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서는 0.3%))(#2 전송기한이 지난 후 물건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2.0%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합니다.)에는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3 If an electronic invoice issuance statement is not sent to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by the 25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nd of the business year in which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falls, after the deadline has passed (excluding those subject to the penalty tax rate of 2.0% for insincere submission of invoices), a penalty tax of 0.5% will be imposed on the taxable amount.){ r1<n>,r5x8<n>}
         10. [5x10](#1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2 법인세 산출세금이 없는 경우)(#3 When there is no corporate income tax assessed.)[n]
             1. {1}(#1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2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도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됩니다.)(#3 Even when there is no corporate income tax, the penalty tax for insincere submission of invoices still applies.){e5x1<n>, e5x2<n>, e5x3<n>, e5x4<n>, e5x5<n>, e5x6<n>, e5x7<n>, e5x8<n>, e5x9<n>}
      6. [6](#1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령§211②))(#2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3 Exemption from the obligation to issue invoices)[n]
         1. [6x1](#1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되는 경우)(#2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3 Cases where the obligation to issue invoices is exempt)[T,r1<n>,e6x2<n>]
            1. {1}(#1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2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3 =In the case of supplying land and buildings){n}
            2. {2}(#1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을 적용받는 사업)(#2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을 적용받는 사업)(#3 =Businesses subject to Value Added Tax Act Article 36① (1) and its Enforcement Decree Articles 73①and 73②){n}
            3. {3}(#1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2 =부가가치세법§36①(1) 및 같은 법 시행령§73① 및 ②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3 =Businesses subject to Value Added Tax Act Article 36①(1) and its Enforcement Decree Articles 73① and 73②, where value-added tax is exempt.){n}
            4. {4}(#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소칙§96의2))(#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3 =Businesses primarily supplying goods or services to consumers, not proprietors){n}
         2. [6x2](#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3 Businesses primarily supplying goods or services to consumers, not proprietors)[T,e6x1<n>]
            1. {1}(#1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2 =금융 및 보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3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business facility management and support services, educational services.){n}
            2.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 =Health and social work services, arts, sports, and recreational services.){n}
            3. {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3 =Income generated from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repair and other personal services, and household employment activities.){n}
            4. {4}(#1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2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3 =Businesses similar to the above, where issuing invoices is impossible or significantly difficult.){n}
            5. {5}(#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3 =When a propriet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presents its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and requests the issuance of an invoice, the invoice must be issued.){n}
      7. [11](#1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2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사례)(#3 Major cases related to failure to issue invoices and submit summary statements)[n]
         1. [12](#1 계산서 교부 관련)(#2 계산서 교부 관련)(#3 Regarding the issuance of invoices)[n]
            1. [13](#1 계산서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통칙75의8-120…1))(#2 계산서교부 의무가 없는 경우)(#3 Where there is no obligation to issue invoices)[T,r1<n>,r6x1<n>]

{1}(#1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2 =법인의 본지점간 물건의 이동)(#3 =Movement of goods between the main office and branches of a corporation.){n}

{2}(#1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3 =When a business comprehensively transfers its operations.){n}

{3}(#1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 매매업자 포함))(#2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3 =When trading securities such as gift certificates.){n}

* + - * 1. [14](#1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2 내국법인의 본지점간 계산서 교부 방법)(#3 Method of issuing invoices between the main office and branches of a domestic corporation)[n]

{1}(#1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서면-2021-법인-5786, 2022.04.08.))(#2 지점이 공급받은 물건을 본점에서 결제하는 경우 본점에서 각각 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 이체는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3 If a branch receives goods from suppliers and the main office pays for them, each branch can receive its own invoice, and inter-branch fund transfers are not subject to invoice issuance.){r1<n>,r13<n>}

* + - * 1. [15](#1 면세물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 여부)(#2 면세품 수입대행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정산받는 경우에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3 Whether invoices are issued when a tax-exempt goods import agency receives L/C opening charges from the consignor)[n]

{1}(#1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위탁자에게 배서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 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14, 2021. 10.21.))(#2 수입대행법인이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선적 인정 증권)을 위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위탁자가 수입통관 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내국법인에게 수입물품 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입물품대금 및 신용장 개설 수수료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 When an import agency delivers a bill of lading (recognized shipping certificate) to the consignor and the consignor receives an import invoice from the tax authorities while settling import goods fees and L/C opening charges with a domestic corporation, import goods fees and L/C opening charges are not subject to invoice issuance.){r1<n>}

* + - * 1. [16](#1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2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방법)(#3 Method of issuing invoices when private parties partially bear the expenses of a busines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n]

{1}(#1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 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게 발급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631, 2021.06.21.))(#2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사업비를 민간이 일부 부담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는 용역제공의 상대방인 지자체에 발급하는 것입니다.)(#3 In cases where private parties partially bear the expenses of a business commissioned by the government, invoices are issued to the local government, the counterpart of the service provider.){ r1<n>,r3<n>}

* + - * 1. [17](#1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2 학교에 공급하는 무상우유급식에 대한 계산서 교부방법)(#3 Method of issuing invoices for free milk supplied to schools)[n]

{1}(#1 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서면-2020-법인-3622, 2020.11.24.))(#2 계산서는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3 Invoices are issued by the proprietor supplying goods or services to the recipient of the goods or services.){ r1<n>}

* + - 1. [18](#1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3 Regarding the submission of a summary statement by sales and purchase location)[n]
         1. [19](#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2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3 When goods or services have been supplied but an invoice has not been received)[n]

{1}(#1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통칙75의8-0…2))(#2 법인이 물건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3 If a corporation receives goods or services but does not issue invoices and does not submit a summary statement by sales and purchase location, the penalty tax for failure to submit the summary statement is not applied.){ r1<n>,r5x1<n>}

* + - * 1. [20](#1 지점 수수분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제출한 경우)(#2 지점이 수수해야 할 계산서를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일괄 제출한 경우)(#3 If a branch submits invoices that should be received by it under the headquarter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n]

{1}(#1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2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3 Even if a branch submits or receives invoices and subsequently aggregates summary statements by sales and purchase location under the headquarter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no penalty tax will be imposed.){ r1<n>}

* + - * 1. [21](#1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계산서로 교부한 경우)(#2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계산서로 교부한 경우)(#3 Where the invoice is issued instead of the tax invoice)[n]

{1}(#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통칙75의8-0…1))(#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3 In cases where VAT-liable goods are supplied without issuing a tax invoice but with an invoice issued in error, no penalty tax will be applied to the portion subject to the insincere tax invoice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However, if the recipient of the invoice fails to submit a summary statement, penalty tax for failure to submit the summary statement will be applied.){ r1<n>,r2<n>}

<boe>